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65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6. 9.(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노연의원외6인】
2.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성 주 군 수】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5.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5.
발 의 자 : 여노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장익봉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함.

2. 제안이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참고사항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5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제도화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정 참여 보장과 정책 자문 기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0명 이내 구성, 임기 2년, 연임 가능 등

다. 분과위원회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제11조)

라. 자문활동을 위한 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비밀엄수 의무 등 명시(제12조～제14조)

마. 경비지원 등(제15조)

-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예산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5067(2025.04.28.)]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2226(2025.04.25)]

라. 입법예고 : 2025. 4. 29. ～ 5. 19.(20일간)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 복지, 관광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사회단체 대표 또는 회원
3. 군정에 관심이 많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군민
4. 그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8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④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군수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요청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정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권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자료와 자문내용, 연구성과물 등의 권리는 성주군이 갖는다.

제17조(회의결과)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문 또는 건의 등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 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 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예상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5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안 제3조, 제4조)

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6조)

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 (안 제7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시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 마련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안 제8조)

바. 자체 청렴도 조사 및 청렴 서약서 징구(안 제9조, 제10조)

사. 협력체계 및 포상 (안 제11조, 제12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 청렴활동 자발적 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포상 근거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규제심사: 기획예산실-5125(2025.04.28.)

라. 성별영향평가: 가족지원과-22652(2025.04.28.)

마. 입법예고: 2025. 4. 29. ~ 5. 19. (20일간)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성주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성주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청렴도 및 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자체 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 서약서) ① 군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 서약서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 등에 대하여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라. 작성자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5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라.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2. 주요 사업

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취득

1) 목적 및 용도

- 국가민속마을(한개마을) 구역내 재산권 보호, 경관 보존을 위해 매수 요청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민속마을 가치 제고

2)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3) 소요예산

- 386,500천원(매입비 /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월항면 대산리 110 외 2필지 1,970㎡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준가격	가감정가	비고
소계		3필지		1,970	187,000	386,500	
토지	월항면 대산리	110	대	679	67,000	135,800	
토지	월항면 대산리	110-1	임야	250	17,000	42,500	
토지	월항면 대산리	379	대	1,041	103,000	208,200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6.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6. : 감정평가 실시
- 2025. 8. : 토지매입

8)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4. 4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25. 3. : 2025년 예산 확정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6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7 : 감정평가 실시
- 2025. 8. : 토지매입

나. (구)CCTV관제센터 부지 등 일반재산 처분

1) 목적 및 용도

- 군유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여 관내 무주택 서민계층,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주거복지 실현

2) 사업기간

- 2024. 8월 ~ 2026. 6월

3)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사업규모

- 성주읍 예산리 334-1 외 2필지 4,790㎡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준가격	가감정가	비고
소계		3필지		4,790	2,801,000	6,516,750	
토지	성주읍 예산리	334-1	대	3,305	2,109,251	4,957,500	
토지	성주읍 예산리	334-20	대	742	260,442	779,100	
토지	성주읍 예산리	334-21	대	743	431,307	780,150	

6) 계약방법

- 처분(수의계약)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4.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6.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9. : 기본협약 체결(성주군↔LH)
- 2026. 6. : 계약체결(환매특약조건 명시)

8)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성주 공공임대주택 건립

- 사업규모 : 공공임대주택 100세대(연면적 9,710㎡)
 · 36형(공급면적 56.44㎡) 66세대, 46형(공급면적 74.90㎡) 34세대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4. 08. : 공모 선정(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 2024. 10. :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 2025. 04.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완료
 · 2025. 09. : 기본협약(성주군↔LH) 체결 및 설계공모
 · 2026. 06.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27. 04. : 착공
 · 2029. 06. : 공사완료 및 입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부지				3	1,970	187,000	3	1,970	187,000	
		건물										
		기타										
	1. 매 입	부지				3	1,970	187,000	3	1,970	187,000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부지										
		건물										
		기타										
처분	계	부지				3	4,790	2,801,000	3	4,790	2,801,000	
		건물										
		기타										
	4. 매 각	부지				3	4,790	2,801,000	3	4,790	2,801,000	
		건물										
		기타										
	5. 양 여	부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부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부지										
		건물										
		기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	대산리 110	679	135,800	3분기	문화유산 보존관리	
2	임	대산리 110-1	250	42,500	3분기	문화유산 보존관리	
3	대	대산리 379	1,041	208,200	3분기	문화유산 보존관리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매각대상수량	기준가격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1	대	예산리 334-1	3,305	3,305	2,109,251	2분기	불필요한 일반재산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	'26년도 매각예정
2	대	예산리 334-20	742	742	260,442	2분기	불필요한 일반재산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	'26년도 매각예정
3	대	예산리 334-21	743	743	431,307	2분기	불필요한 일반재산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	'26년도 매각예정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부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부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부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양여 대상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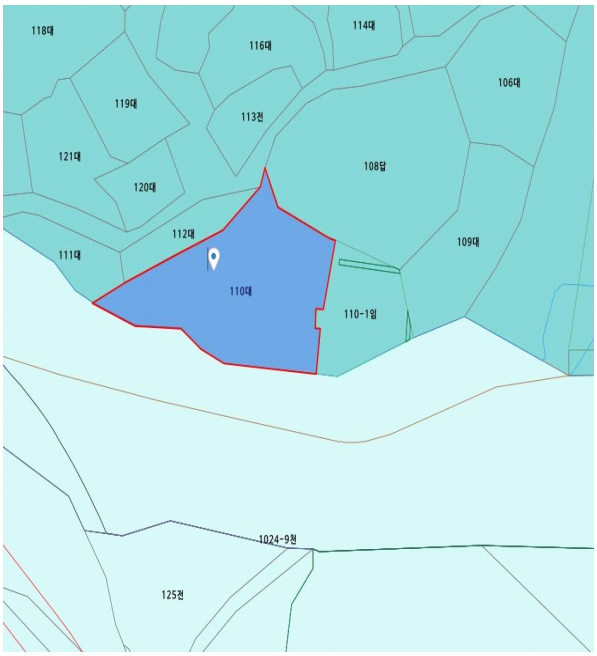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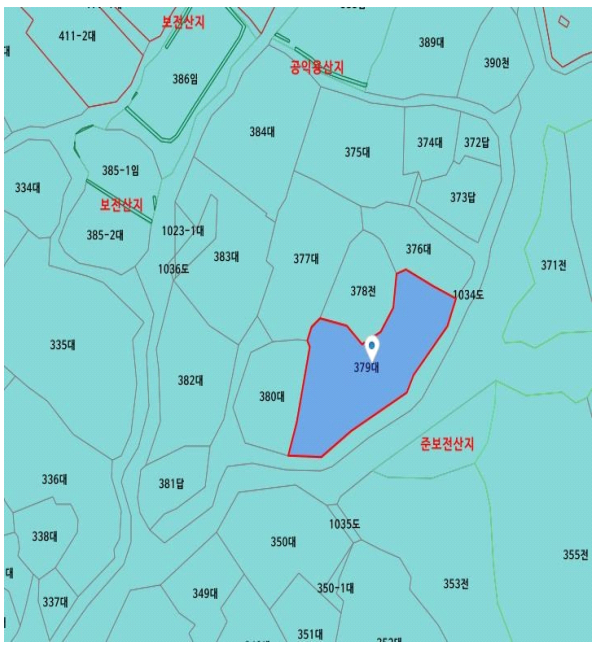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사유지 취득 참고자료



위 치 도





지 적 도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사유지 취득 참고자료





현장사진1 (대산리 110번지, 110-1번지)



현장사진2 (대산리 37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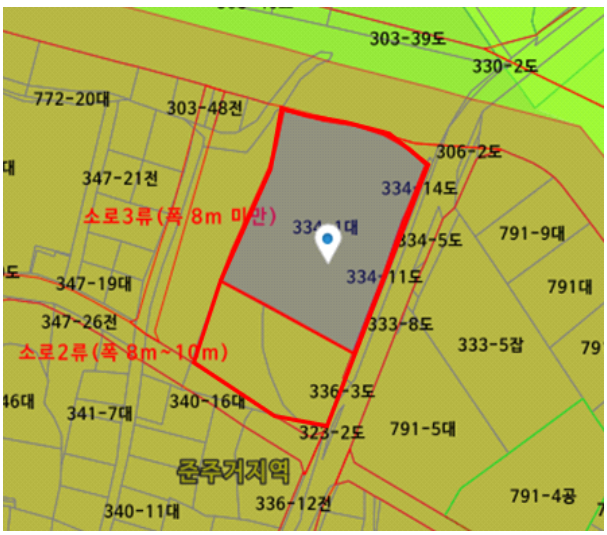
(구) CCTV 관제센터 부지 등 일반재산 처분 참고자료



위 치 도



지 적 도



토지이용계획도

(구) CCTV 관제센터 부지 등 일반재산 처분 참고자료



현장사진1 (예산리 334-1번지)



현장사진2 (예산리 334-21번지)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5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가야산오토캠핑장 내 유휴공간을 매점시설로 사용허가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치 : 가천면 신계리 726외 17필지

나. 시설현황 (단위 : ㎡)

구분	주1동	주2동	부1동	부2동	총
연 면 적	393.92	107.83	22.5	33	557.25
대지면적	16,080				

다. 대상시설 : 가야산오토캠핑장 주1동 1층 매점(47.16㎡)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지역제한) 모집

마.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바. 사 용 료 : 21,346,360원/년(부가가치세 별도)

사. 사용허가 조건

○ 매년 사용료 산정·부과에 따른 납부
○ 사용허가 재산 관련 보험가입 및 공과금 등 운영비 일체 부담
○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
○ 사용허가 재산 제3자 전대 불가 및 연고권 배제
○ 판매・운영을 위한 관련 법 준수

3. 관련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사용허가, 기간)

나.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제31조(사용료의 요율,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다.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사용허가, 기간)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제31조(사용료의 요율,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 중략 ~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토지·건물의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③「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5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정비 협조 요청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주소 현행화(안 제2조)

-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81-1 → 성주군 성주읍 경산2길 22-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3129(2025.3.11.)

라. 성별영향평가 : 가족지원과-13752(2025.3.12.)

마. 입법예고 : 2025. 3. 24. ~ 2025. 4. 14.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산리 481-1번지”를 “경산2길 22-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성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81-1번지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 ---------- 경산2길 22-3----------.

□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 점유자 ·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 · 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5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 (안 제50조)

나.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 완화 조건 개정(안 제52조의2)

다.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변경 (안 제54조)

라. 군계획위원회 위원장 임명 개정 (안 제57조)

마. 조례 별표 개정 (안 별표3 외)

- 주거지역내 일반게임제공업 용도 제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졸업학력 인증되는 중고등학교 허용
- 생산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및 농기계수리점 허용
- 농림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및 농기계수리점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428(2025.1.24.))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지원과-7043(2025.2.6.))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25.04.24. ~ 05.14.)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84조의2제2항”을 “영 제84조의2제4항”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을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를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로 한다.

제54조제3항제1호 중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되며”를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

[별표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라목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3)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사목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를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바목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을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마목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를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나목 중 “나목”을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린생활시설(”를 “근린생활시설[”로, “너목”을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를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 중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를 “대피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너목”을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2. ----------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단서 신설>	가. ----------.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	제52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

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 ---------- -. ---------- ---------- ---------- ---------- ---------- ---------- ---------- ---------- ---------- ---------- -.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나. ----------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③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1. ----------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구성) ① (생 략)	제5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환경·농업·경제·건설·도시·건축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③ ---------- 부군수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 자. (생 략)	마. ~ 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	차. ----------

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 ---------- ---------- ---------- ---------- ------. ---------- ---------- ----------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 ---------- ---------- ---------- ---------- ----------

당하는 것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카. ~ 버. (생 략)	카. ~ 버. (현행과 같음)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2.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u>다목</u>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	다.---------- ---------- <u>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u>---------- ---------- ---------- ---------- ---------- ---------- ---------- ---------- ---------- ---------- ----------

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 러. (생 략)	라. ~ 러. (현행과 같음)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다. ---------- --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 러. (생 략)	라. ~ 러. (현행과 같음)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사. ---------- ----------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 하. (생 략)	아. ~ 하. (현행과 같음)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 ---------- ---------- ----------	바. ---------- ----------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사. ~ 거. (생 략)	사. ~ 거. (현행과 같음)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마. ---------- ----------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 하. (생 략)	바. ~ 하. (현행과 같음)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 -------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 근린생활시설[-- ----------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 제외한다)]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	바. ---------- ----------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 ---------- ---------- ---------- ----------

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사. ~ 더. (생 략)	사. ~ 더. (현행과 같음)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 대피소----------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나.---------- 너목(농기계 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다. ~ 거. (생 략)	다. ~ 거.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50조 관련)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52조의2 관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④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4. 5. 28.>

관련법령 발췌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54조 관련)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관련법령 발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57조 관련)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 1. 15., 2008. 1. 8.>

관련법령 발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 별표3,4,5 관련)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3 관련)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발췌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4 관련)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5 관련)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관련법령 발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14 관련)

별표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15 관련)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17 관련)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18 관련)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20 관련)

별표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 별표18 관련)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6. 9.(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성 주 군 수】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제도화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정 참여 보장과 정책 자문 기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0명 이내 구성, 임기 2년, 연임 가능 등

다. 분과위원회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제11조)

라. 자문활동을 위한 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비밀엄수 의무 등 명시 (제12조～제14조)

마. 경비지원 등(제15조)

-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예산지원 가능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군민 참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군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들의 자문을 통해 군정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안 제3조, 제4조)

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6조)

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 (안 제7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시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 마련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안 제8조)

바. 자체 청렴도 조사 및 청렴 서약서 징구(안 제9조, 제10조)

사. 협력체계 및 포상 (안 제11조, 제12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 청렴활동 자발적 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포상 근거 규정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조사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부패방지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로, 군민 신뢰 회복 및 조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라.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취득

1) 목적 및 용도

- 국가민속마을(한개마을) 구역내 재산권 보호, 경관 보존을 위해 매수 요청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민속마을 가치 제고

2)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3) 소요예산

- 386,500천원(매입비 /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월항면 대산리 110 외 2필지 1,970㎡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준가격	가점정가	비고
소계		3필지		1,970	187,000	386,500	
토지	월항면 대산리	110	대	679	67,000	135,800	
토지	월항면 대산리	110-1	임야	250	17,000	42,500	
토지	월항면 대산리	379	대	1,041	103,000	208,200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6.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6. : 감정평가 실시
- 2025. 8. : 토지매입

8)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4. 4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25. 3. : 2025년 예산 확정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6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7 : 감정평가 실시
- 2025. 8. : 토지매입

나. (구)CCTV관제센터 부지 등 일반재산 처분

1) 목적 및 용도

- 군유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여 관내 무주택 서민계층,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주거복지 실현

2) 사업기간

- 2024. 8월 ~ 2026. 6월

3)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사업규모

- 성주읍 예산리 334-1 외 2필지 4,790㎡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준가격	가감정가	비고
소계		3필지		4,790	2,801,000	6,516,750	
토지	성주읍 예산리	334-1	대	3,305	2,109,251	4,957,500	
토지	성주읍 예산리	334-20	대	742	260,442	779,100	
토지	성주읍 예산리	334-21	대	743	431,307	780,150	

6) 계약방법

- 처분(수의계약)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4.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6.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9. : 기본협약 체결(성주군↔LH)
- 2026. 6. : 계약체결(환매특약조건 명시)

8)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성주 공공임대주택 건립**
- 사업규모 : 공공임대주택 100세대(연면적 9,710㎡)
 · 36형(공급면적 56.44㎡) 66세대, 46형(공급면적 74.90㎡) 34세대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4. 08. : 공모 선정(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 2024. 10. :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 2025. 04.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완료
 · 2025. 09. : 기본협약(성주군↔LH) 체결 및 설계공모
 · 2026. 06.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27. 04. : 착공
 · 2029. 06. : 공사완료 및 입주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국가지정문화제 구역 내 사유지 취득 >

○ 본 안건은 한개마을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민속마을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월항면 대산리 110번지 외 2필지(1,970㎡)의 사유지를 3억 8,7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로, 이를 공공재산으로 편입함으로써 향후 문화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존·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매입 재원은 국비(70%) 및 도비(15%)가 포함되어 있어 군비 부담이 비교적 적으며,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보존이라는 공공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바, 본 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구)CCTV관제센터 부지 등 일반재산 처분 >

○ 본 안건은 성주읍 예산리 344-1 외 2필지(4,790㎡)의 군유지를 무주택 서민계층,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사유가 있으며,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

1. 제안이유

가야산오토캠핑장 내 유휴공간을 매점시설로 사용허가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치 : 가천면 신계리 726외 17필지

나. 시설현황 (단위 : ㎡)

구분	주1동	주2동	부1동	부2동	총
연 면 적	393.92	107.83	22.5	33	557.25
대지면적	16,080				

다. 대상시설 : 가야산오토캠핑장 주1동 1층 매점(47.16㎡)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지역제한) 모집

마.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바. 사 용 료 : 21,346,360원/년(부가가치세 별도)

사. 사용허가 조건

○ 매년 사용료 산정·부과에 따른 납부

○ 사용허가 재산 관련 보험가입 및 공과금 등 운영비 일체 부담

○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

○ 사용허가 재산 제3자 전대 불가 및 연고권 배제

○ 판매・운영을 위한 관련 법 준수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가야산오토캠핑장의 유휴공간을 매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군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캠핑장 활성화와 세외수입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해당 공간을 사용허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연간 사용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실제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휴공간의 활용이 지연되거나 수익 창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정비 협조 요청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주소 현행화(안 제2조)

-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81-1 → 성주군 성주읍 경산2길 22-3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 보훈회관의 정확한 위치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소재지인 “경산리 481-1번지”를 현재의 도로명 주소 체계에 따라 “경산2길 22-3”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주소체계의 현실화를 통해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 (안 제50조)

나.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 완화 조건 개정(안 제52조의2)

다.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변경 (안 제54조)

라. 군계획위원회 위원장 임명 개정 (안 제57조)

마. 조례 별표 개정 (안 별표3 외)

- 주거지역내 일반게임제공업 용도 제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졸업학력 인증되는 중고등학교 허용
- 생산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및 농기계수리점 허용
- 농림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및 농기계수리점 허용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정의 및 용도변경 기준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및 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